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 - 271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6 월 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자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는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서 인계한 몰수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의 도난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의무 강화(안 제12조의2)

나.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결과를 보고 하도록 훈령 위임근거 신설(안 제22조)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규 지정(안 별표 2, 3, 4, 6)

-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물질 2종,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물질 14종,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라. 바르비탈 유사체의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명확화(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jungeun83@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도난사고”를 “도난 또는 유출사고”로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한 시·도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한다.

별표 2에 제114번란부터 제116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유-49900(U-49900)	3,4-dichloro-N-[(1R,2R)-2-(di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115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N-ethyl-5-nitro-1H-benzimidazole-1-ethanamine
116	엔-피롤리디노 이소토니타젠(N-Pyrrolidino Isotonitazene)	5-nitro-2-[(4-propan-2-yloxyphenyl)methyl]-1-(2-pyrrolidin-1-ylethyl)benzimidazole

별표 3에 제148번란부터 제159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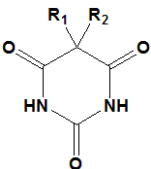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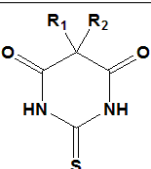
148	메페드린(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
-----	------------------	----------------------------------

		1)propan-2-amine
149	메프테트라민(Mephtetramine, MTT A)	2-(methylaminomethyl)-3,4-dihydro-2H-naphthalen-1-one
150	알파-디2피브이(α -D2PV)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 ne
151	디에프-엠디비피(DF-MDBP)	1-[(2,2-difluoro-1,3-benzodioxol-5-yl)methyl]piperazine
152	4-에이씨오-디이티(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153	4-에이씨오-디엠티(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154	4-오에이치-엠이티(4-OH-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ol
155	4-에이씨오-엠이티(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156	4-오에이치-엠아이피티(4-OH-Mi PT)	3-[2-[methyl(1-methylethyl)amino]ethyl]-1H-indol-4-ol
157	4-에이씨오-이피티(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158	4-에이씨오-디에이엘티(4-AcO-DALT)	[3-[2-[bis(prop-2-en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159	5-엠이오-2-티엠티(5-MeO-2-T MT)	2-(5-methoxy-2-methyl-1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별표 4에 제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3-플루오로펜메트라진(3-Fluorophenmetra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	---	---------------------------------------

별표 5 제60번과 제61번의 화학명 또는 구조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Barbituric acid: 2,4,6(1H,3H,5H)-pyrimidinetri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기본구조	R
	○ R1, R2: 각각 결합 가능한 작용기(H 제외)
Thiobarbituric acid: 2-thioxodihydro-4,6(1H,5H)-pyrimidinedi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기본구조	R
	○ R1, R2: 각각 결합 가능한 작용기(H 제외)

별표 6에 제8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2S)-2-(5-chloro-4-methyl-1H-benzimidazol-2-yl)-2-methylpyrrolidin-1-yl]-[5-methoxy-2-(triazol-2-yl)phenyl]methanone
----	----------------------	---

별표 8 제1호가목에 제24번의 품명란 중 “alpha”를 “alpha”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 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u>도난사고</u> 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 사항)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도난 또는 유출사고</u> ----- -----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한 시· <u>도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u> <u>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식</u> <u>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u> <u>여야 한다.</u>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u>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u>	5. ----- <u>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u>----- -----
6. ~ 15. (생략)	6. ~ 15. (현행과 같음)